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49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6년 6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6 June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법 인식 높여야

I. 유치원·어린이집 교사¹⁾ 법 인식 제고의 필요성

「유아교육법」 제20조는 교직원
을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교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
교사 및 교사를 포함함. 반면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보육교
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
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
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
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들을 구분하
지 않고 있음.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 속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유능한 교사들의
현장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됨.
 - ▶ 보육교사 중 46.5%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²⁾
- 교육부 차원에서 일부 법·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권을 보장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여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기관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교사의 법적 지위와 보장
내용이 상이하어 기관특성에 따른 교사 집단 간 소외와 갈등의 여지가 있음.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스스로 교사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 권익 관련 주요 법·제도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법·
제도 인식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권익 관련 법·제도 인식 제고와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 교사 스스로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은 교사 권익
증진의 첫걸음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밑바탕이 됨.

II.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 유치원 교사는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³⁾
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이렇듯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음(그림 1 참조).

1) 본고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이라는 용어가 아닌 교사라는 용어로 통일
하여 사용함. 또한 보육교사가 정식명칭이나 어린이집 교사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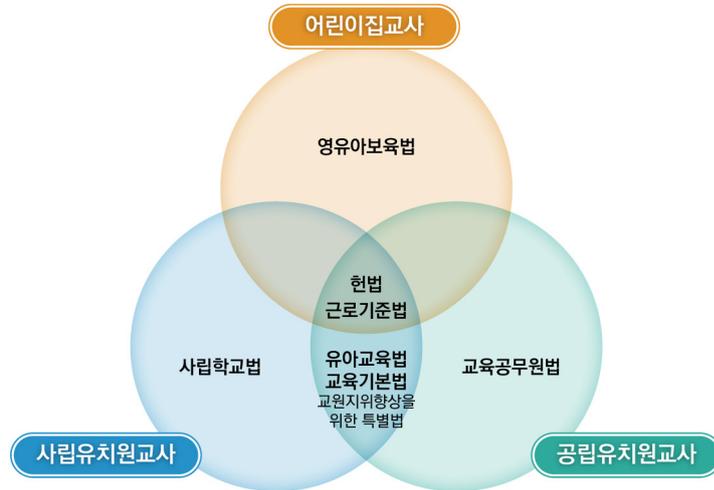
2) 국가인권위원회(2012).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pp.75-76.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함(「영유아보육법」 제2조 2항).



유치원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의 지위를,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 ▶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사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의 지위를 가짐. 이에 반하여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자료: 김길숙·문무경·이민경(201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3.

[그림 1]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유형별 관련 법

Ⅲ.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인식 실태⁴⁾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은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교육활동을 위해 타인의 지시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로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교재의 선택 결정권, 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등이 포함됨.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교육의 효과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을 주는 등 적절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권리임. 또한 교사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 등이 이에 해당됨.

- 교사 권익 관련 법 분석 틀은 ILO와 UNESCO(1966)의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와 위미숙(2005)이 분류한 교사의 권리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 ▶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복지후생 제도 요구권’,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으로 나누어 분석함.
-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5개 권리에 관한 법·제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립 유치원 교사가 사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인식 비율이 더 높았음(표 1 참조).
 - ▶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법에 보장된 교사의 권익에 대한 사항들을 알고 있었으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요양비 지급’, ‘단체가입 가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사립 사인 유치원 교사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익 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4) 육아정책연구소 기본연구과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김길숙·문무경·이민경, 2015)의 pp.101-132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유치원 교사 601명, 어린이집 교사 9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1> 유치원 교사의 권리 관련 법·제도 인식

단위: %

권리	법·제도	공립		사립	
		단설	병설	법인	사인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 정기적 교육 및 연수/보수교육	86.7	80.1	72.7	70.0
	• 인건비 및 연수경비 지원	98.0	92.7	82.7	64.0
	• 국내외 연수 및 비용 지원	84.7	80.8	58.0	38.7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유지	84.0	88.7	62.7	49.3
	• 1일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88.7	88.1	63.3	56.7
	• 휴직 사유(출산, 병가 등)로 인한 휴직	98.7	98.7	78.7	64.0
	•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	98.0	96.7	60.0	45.3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	72.0	68.2	34.0	28.7
	• 90일의 산전후 휴가(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94.0	96.0	64.7	54.0
	• 임신부의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근무시간 중 병원 검진 허용	80.0	76.8	49.3	38.7
복지후생 제도 요구권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명시	-	-	68.7	57.3
	•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 요양비 지급	71.3	72.2	51.3	38.7
	• 정기적 건강진단	96.0	90.7	80.0	69.3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	•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보호 가능	93.3	89.4	81.3	67.3
	• 공무원(사학) 연금제도	94.7	90.7	96.0	90.7
	• 형의 선고·징계처분·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아니함	88.0	84.1	54.0	46.7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 활동권	• 불체포특권	85.3	78.1	40.0	38.0
	• 부당 해고 시 구제신청을 위해 소송제기 가능	82.7	81.5	54.0	44.0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 활동권	• 교사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 가입 가능	78.7	66.2	34.7	28.7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치만 제시한 것임.

2) 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명시' 항목은 해당 없음.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5개 권리에 관한 법·제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 교사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인식 비율이 더 높았음(표 2 참조).
 - ▶ 국공립/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 교사는 전체 17개 항목 중 12개에서 70% 이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9개 항목에서 70% 이상의 인식비율을 보였음.
 - ▶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권리에 대한 인식비율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임산부의 근무 중 병원검진 허용', '요양비 지급', '부당 해고 시 소송제기 가능', '단체가입 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상관 없이 교사들의 인식비율이 대체로 낮았음.

'복지후생제도 요구권'은 교사의 생활안정과 함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줌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연금, 자녀학비 보조금, 무주택 교원지원, 업무상 재해 및 부상에 대한 보상 등이 있음.

'신분보장권'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불체포특권'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함. 이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교사의 권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직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임.

〈표 2〉 어린이집 교사의 권리 관련 법·제도 인식

단위: %

권리	법·제도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민간 단체 등	직장	가정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 정기적 교육 및 연수/보수교육	75.7	77.5	79.6	69.3	70.2	80.0
	• 인건비 및 연수경비 지원	84.9	80.8	81.6	63.3	86.8	56.0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 1일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89.5	82.1	84.2	85.3	88.7	86.0
	• 휴직 사유(출산, 병가 등)로 인한 휴직	92.8	88.1	90.8	86.7	94.7	84.0
	•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	86.8	80.1	80.3	72.7	96.0	74.0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	57.9	41.7	44.1	41.3	58.9	43.3
	• 90일의 산전후 휴가(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81.6	80.8	77.6	70.7	80.8	66.7
	• 임신부의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근무시간 중 병원 검진 허용	57.2	66.2	56.6	57.3	63.6	53.3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명시	96.1	94.0	90.8	88.7	98.0	87.3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금지	89.5	87.4	88.8	86.7	90.1	84.0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 통지	77.0	74.8	72.4	72.7	79.5	70.0
	•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 요양비 지급	56.6	55.6	57.9	47.3	56.3	41.3
복지후생 제도 요구권	• 정기적 건강진단	92.8	98.0	92.8	90.0	96.7	91.3
	•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보호 가능	78.3	82.8	81.6	80.0	82.1	77.3
	• 퇴직급여 제도	97.4	98.0	98.0	96.7	98.7	96.7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 활동권	• 부당 해고 시 구제신청을 위해 소송제기 가능	63.8	60.9	64.5	64.7	67.5	64.0
	• 교사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 가입 가능	36.8	39.7	36.2	38.7	38.4	36.0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치만 제시한 것임.
2)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신분보장과 불체포특권' 관련 법·제도는 없음.

IV. 제언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 법에 보장된 교사 권익에 대한 법 인식을 높여야 함.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권익관련 법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사 교육·연수와 홍보가 필요함.
 - ▶ 교사에 대한 정기 교육·연수 또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사 권익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 법으로 보장된 교사 권익 내용들을 담은 책자(예: 대만의 공립교사 권익수첩)를 제작·배포하거나, 보육교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도 있음.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권익 범주 중 법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과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중 교육·보육 시 타의 지시나 간섭 없이 전문가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어린이집 교사의 정체성 확립 및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함.

김길숙 부연구위원 gskim@kicce.re.kr